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33 호
의결년월일	2005. 9. . (제 18 회)

제출일자	2005. 8.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제정이유

- 계룡시 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시비 출연 및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장학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인재의 발굴·육성을 장학재단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장학재단은 법인으로 함(안 제2조)
- 장학재단의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장학재단의 기금조성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운영경비는 기금의 이자와 제6조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 제24조,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금 규정 제4조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계룡시 애향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장학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우수교사 및 학생의 학술연구 지원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 기타 인재육성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기타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7조 (운영경비)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제6조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및 결산 등)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장학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 취)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8.7.16>

[본조신설 1990.11.6]

□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학금 규정

제4조장학금은 사상이 건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가 긴절이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